

『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시민참여토론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6조)
- 시민참여토론회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0. 1. 13. ~ 1. 20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시정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사항, 공공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 현안문제와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, 사전에 집행기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,
-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, 회의에서 도출된 시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회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